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5. 4. 28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4월 21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22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5. 4. 2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통합조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2014년 4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업무의 효율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개별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근거를 두고 2010.9.10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사회적기업 조례’라 한다)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근거를 두고 2013.9.26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협동조합 조례’라 한다)가 2014.4.24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사회적경제 조례’라 한다)로 통합 제정되었으며 ‘사회적기업 조례’는 통합조례 제정시 폐지되었으나 ‘협동조합 조례’는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상태임.
- 이번 폐지 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‘협동조합 조례’와 통합조례인 ‘사회적경제 조례’의 중복으로 인한 조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, 입법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‘협동조합 조례를’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 정비라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8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나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통합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2014년 4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업무의 효율성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개별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)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5. 1. 22. ~ 2.11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